제 1 장 소하천 일반사항

제 1 장 소하천 일반사항

제 1 절 목적 및 적용

1.1 목적

1.1.1 소하천 시설편람은 소하천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와 하천의 수질관리 및 친수환경 조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기술수준의 향상과 체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1.2.1 소하천 시설편람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풍수해로 인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중 특히 기술상의 취약점이 많은 소하천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계속 증가 반복하고 있어, 이들 시설물에 대한 조사,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와 하천의 수질관리 및 친수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에 적용토록 한다.

1.3 관련법규

1.3.1 소하천정비에 관한 법규로는 소하천 정비법이 있으며 이법은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용어 정의

2.1 용어 정의의 목적

2.1.1 소하천 시설편람에 쓰이는 용어 중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몇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기에서 특별히 정의한 용어를 제외한 소하천 시설편람에 사용되는 용어는 소하천정비법 및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건교부 제정)에 따른다.

2.2 소하천

2.2.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중에서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정하여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1. 소하천이라 함은 비법정하천(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제외)으로서 수문지형학적 인자에 따른 소하천의 범위는 표 1.1과 같다.
2. 우리나라의 소하천은 대부분 도시나 마을의 배수로 형태나, 산간지나 벌판의 구거 형태로 되어 있는데,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된 이후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매년 홍수로 인한 수해로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3. 최근에는 산업화의 진전과 국민소비의 증가에 따라 공장·축산의 오폐수는 물론, 생활쓰레기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하천의 수질 및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표 1.1 수문지형학적 인자에 따른 소하천 범위

지 역	유역면적(km^2)	유로연장(km)	비 고
평야지역 산지지역	5.5 이내 10.5 이내	4.0 이내 5.0 이내	
평 균	8.0 이내	4.5 이내	

2.2.2 소하천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유역면적이 작으며, 유로연장이 짧다.
2. 하천의 개수구간이 군, 읍,면,동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천 개수가 군,읍,면,동의 경제 및 행정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유역면적이 작으므로 국지적 호우에 지배된다.
4. 유로연장이 짧으므로 단시간 강우량에 지배된다.
5. 유역면적이 작고 유로연장이 짧으므로 홍수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집중 호우시 많은 재해가 발생되고 하천정비 유무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다.
6. 도달시간은 대부분 30분 이내이다.
7. 지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상류부는 산과 농경지가 접해 있는 계곡을 따라 심한 굴곡과 급경사를 이루어 흐른다.
   2) 중류부는 마을에 인접하거나 관통하는 경우가 많다.
   3) 하류부는 약간 완만해져 법정하천과 합류한다.

8. 하폭은 2m정도 부터 60m까지 있으며 보통 5~15m정도가 대부분이다.
9. 하천연장은 0.5 km정도에서 12 km 정도까지 있으나 대부분 연장이 짧고 유역면적이 협소한 실정이다.
10. 하상경사는 대체로 1/30~1/100 (일반하천은 1/80~1/10,000)의 급경사를 이루어 홍수량이 일시 유출되어 유속이 빨라지고 수해발생 위험이 많다.
11. 제방 축조 및 하도정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홍수 피해의 영향을 받기 쉽다.
12. 정비구간이 군, 읍면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하천개수가 군,읍,면,동의 경제 및 행정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13. 시설물은 농수로, 농업용수용 보, 수문, 소교량, 제방 등으로 구성된다.

2.3 소하천구역

2.3.1 소하천구역이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소하천 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제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제외지측의 토지의 구역을 의미한다.

2.4 소하천 부속물

2.4.1 소하천 부속물이란 소하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水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소하천의 정비
2. 소규모시설
3.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준용

제 3 절 내용

3.1 구성 및 내용

3.1.1 소하천 시설편람은 소하천 일반사항, 유역 및 하천 조사, 설계 강우 및 홍수량, 홍수방어, 하도계획, 제방의 계획 및 설계, 호안의 계획 및 설계, 기타 시설물 (농로 및 소교량, 낙차공, 보, 암거, 옹벽 및 기초 등), 소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소하천 환경관리의 10개 장으로 구성하며 사업의 기술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3.2 개정

3.2.1 소하천 시설편람의 내용은 기술수준이 향상되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각 장은 절·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편람은 기술판단을 그르침이 없도록 체계화하고, 내용의 설명, 그 배경 및 사례 등을 게재한다.

3.2.2 소하천 시설편람은 기술수준의 향상, 관계법령의 개·폐 등에 따라 조속히 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4 절 운용방침

4.1 운용상 적용 예외

4.1.1 소하천 시설편람을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편람에 표시된 기술적 수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편람을 벗어날 수 있다.

4.1.2 본 편람은 현 단계에서 표준이라고 생각되는 기술적 사항을 표시한 것이며, 고도의 기술을 지향하는 것을 방해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책임기술자가 본 편람에 따르는 것이 부적당하고 동시에 본 편람에 제시된 기술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편람에 따르지 않아도 좋다. 여기에서 책임기술자라함은 보통 각 업무조직에서 그 관장 범위에 대한 기술상의 판단에 책임을 지는 기술자를 말한다.

4.2 법령 또는 기준과의 관계

4.2.1 소하천 시설편람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관계되는 제 법령이 별도로 정해 있는 경우에는 본 편람에 구애됨이 없이 그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4.2.2 소하천 시설편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소하천정비시 문제가 되는 사항은「하천공사표준시방서」와 「하천시설기준」 또는 「댐시설기준」등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기준을 준용토록 한다.

제 5 절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

5.1 소하천 지정

5.1.1 소하천의 지정권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있고 소하천의 정비와 유지·관리는 소하천정비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있다.

5.1.2 소하천 지정 대상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 하며, 그 규모는 평균하폭 2m 이상, 총연장(시점-종점) 500m 이상으로 한다.

5.1.3 소하천 지정전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며, 지정시에는 소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정하여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고 고시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5.2 소하천 관리

5.2.1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한 것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소하천을 지정·고시한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있으며, 소하천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고시한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이를 관장 한다.

5.3 소하천법과 일반하천법의 차이점

5.3.1 소하천 정비법은 일종의 촉진법으로 재해예방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소하천의 정비" 에 중점을 두고 있고

5.3.2 하천법은 하천에 관한 기본법으로 주된 내용이 효과적인 치수(治水)와 이수(利水)를 위한 "하천관리" 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1.2 참조)

표 1.2 관련법상 주요 차이점

구 분	소 하 천 정 비 법	하 천 법
기본성격	정 비 촉 진 법	관 리 법
제정목적	소하천지역의 재해예방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하수로 인한 피해예방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
규정대상	소하천	직할 · 지방 · 준용
주요내용	소하천 정비 및 보전	하천 관리 및 사용
지정권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국가(직할 · 지방) 또는 시 · 도지사(준용)
관리청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국가(직할) 또는 시 · 도지사(지방 · 준용)
소유권의 귀속	국유 · 공유 또는 사유	국유(직할 · 지방) 또는 국유 · 공유 · 사유(준용)

제 6 절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요령

6.1 정비추진요령

6.1.1 건강한 소하천을 형성하여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소하천정비사업의 목적을 두고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치수 · 이수관리와 자연환경이 잘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정비
2. 국민의 정서함양 등 휴식공간으로서의 친숙한 소하천정비
3. 풍요로운 전원의 자연환경 회복을 위한 건강한 소하천정비

6.2 기본이념

6.2.1 자연형 소하천정비의 기본이념은 하천 치수상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소하천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생태계의 양호한 서식환경을 고려하고

6.2.2 아울러, 아름다운 소하천 본래의 경관을 보전 · 향상시키는 소하천정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6.3 기본방침

6.3.1 소하천 본래의 자연감을 느낄 수 있는 소하천정비

6.3.2 자연상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소하천정비

6.3.3 소하천 및 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재료와 정비공법을 조합한 소하천정비

6.3.4 하천 및 본류 상하류 등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한 소하천정비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형 소하천 환경정비)

6.4 정비방향

6.4.1 친수적 환경을 고려한 소하천정비

1. 자연생태계를 배려한 자연보전계획
   1) 소하천 유지유량 확보, 분류하수설비 및 환경호안 등 자연 생태계를 배려한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소하천의 자정기능을 촉진시키는 정비공법을 채택하여 소하천의 자연보전기능을 보강토록 한다.
   3) 소하천 주변의 습지는 최대한 보전하여 생태계의 모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2. 수변경관의 조성 등 친수공간 확보
   1) 유수지 등에 안전시설, 소하천에 징검다리, 낙차보, 라버보 등을 설치하여 소하천 경관 및 유량을 확보토록한다.
   2) 소하천변에 산재되어 있는 수목을 이식하여 수변경관을 조성한다.
3. 쉼터 등 다목적 이용공간 조성
   1) 소하천 바로잡기 등으로 생긴 유휴지에 나무숲과 휴식시설을 설치한다.
   2) 재해위험이 없는 화초 및 관목류 등으로 소하천 경관을 조성하여 주민휴식 등 다목적 이용공간으로 활용한다.

6.4.2 재해예방과 소하천환경 정화를 병행한 미래지향적 다목적정비

1. 재해예방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비가 되도록 치수·이수기능을 도입하고,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한다.
2.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후, 수계별·유역별 특성을 잘살려 다목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3. 환경기능을 접목한 다목적으로의 정비가 불가능한 소하천은 사업대상지 선정시 가급적 제외하고, 지역 여건상 우선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은 지역특성에 알맞는 시범사업으로 정비토록 추진한다.

6.4.3 농수로와 농로를 동시에 정비하여 농어업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

1. 자연과 생물이 살아 숨쉬는 하천환경으로 건전하고 우리나라의 하천특성에 잘맞는 소하천 환경정비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2. 소하천환경정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투자확대로 떠나가는 농촌에서 되돌아오는 농촌이 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하천정비와 함께 농로와 농수로 등을 종합 정비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6.4.4 지역경제활성화 및 수계별 완료 위주 추진

1. 투자비가 지역에 환류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지역간 균형투자가 되도록 하고, 수계별로 완결 위주로 추진토록한다.

6.5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소하천정비법 제 6,7,8조)

6.5.1 종합계획

1. 관할구역내 전체 소하천에 대한 장기 개발방향 및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소하천정비법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 받도록 한다.
2. 소하천을 관할하는 관청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용역 등을 실시하므로써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 정비의 기본방침
   2) 수계별 소하천망 구성
   3)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5) 소하천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6) 고수부지 조성 등 여가생활 공간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8) 소하천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
   9) 기타 소하천의 보전과 이용에 관련된 기본사항
4.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요령」(1997, 내무부) 참조>
   1)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소하천과 관련된 도시정비 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 소하천정화사업 등과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반영토록하여야 한다.
   2) 향후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지침으로서 모체가 될 수 있도

록 주변여건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차질이 없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3) 소하천의 친수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치수 및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시지역 하천구간에는 조경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4)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이 소하천정비의 가장 중요사항으로서 그간 발생되었던 수해 등 수질오염, 환경저해요인 등을 정확히 검토·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5.2 중기계획

1. 상위계획인 종합계획을 근간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소하천 정비법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지방양여금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오염 소하천 중·장기계획과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기 수립한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을 소하천정비법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제출토록 한다.
4. 중기계획의 수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1) 소하천정비 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 대규모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하천정비 수요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3) 연도별 소하천정비사업 계획이 소하천정비 목표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5)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6.5.3 시행계획

1.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차년도 세부 시행계획으로,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농특세로 추진하는 농어촌오염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지방 환경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 (시행규칙 제5조)
3.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오염소하천 정비사업과 지방비에 의한 자체사업으로 구분 작성하되 자체사업은 지방양여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필히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4. 과업의 단계설정
   1) 제 1 단계 : 기초자료 수집 및 관련계획 검토
   2) 제 2 단계 : 기본방향 및 구상
   3) 제 3 단계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안』 확정

4) 제 4 단계 : 성과품 및 보고서 작성

표 1.3 각 단계별 과업의 중점검토 내용

제 1단계 : 기초자료 수집 및 관련계획검토		
· 현지조사 - 조사 측량 - 하천구조물 조사 - 주변지역 토지이용 실태 조사 - 기왕홍수 및 피해 실태 조사 - 유황 및 수질조사	· 기초자료 수집 - 통계년보, 기상·수문 자료 - 치수사업 연혁 조사 - 유수 및 주요 인허가 사항 · 기존 저수지 제원 조사	· 관련계획 - 도시계획 - 주변지역의 각종 개발계획 등 - 유역개발계획 등

제 2단계 : 기본방향 구상		
· 수리·수문 분석 - 확율강우량 및 홍수량 - 홍수위 분석 - 홍수피해 원인분석 - 갈수량 분석	· 하천환경의 현황파악과 장래전망 - 유역 및 하천환경 - 하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망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 바람직한 하천의 모습 전망	· 기본방향 및 구상 - 구역구분과 하천환경 개선의 기본방침 - 소하천공간 정비종합계획「안」구상 - 물환경 보전계획

제 3단계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안」 확정	
·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 소하천공사시행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소하천공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소하천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 폐천부지이용 및 활용방안 조사	· 치수경제성 검토 · 효과 분석

제 4단계 : 성과품 및 보고서 작성		
· 소하천대장작성 - 하천의 일반사항 - 소하천 현황대장조서 - 측량기준점 제원현황 - 소하천예정지 지정현황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소하천 실태조서 - 소하천 허가대장 - 소하천구역 지정현황	- 보고서 - 부 록

6.6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6.6.1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부터 우선 정비

1. 농어촌 환경보호와 상수원 오염방지가 시급한 소하천을 우선 선정한다.
2. 지역주민 숙원지역 등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가시적으로 사업효과가 큰 소하천을 대상으로 한다.

6.6.2 소하천정비 우수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

1. 지방비 확보 등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 일정비율(약5%)로 차등지원토록 한다.
2. 투자비 지역 환원 및 농로·농수로 정비와 하천환경 정화를 병행하여 추진하므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

6.7 사업추진

6.7.1 공사설계

1.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비가 되도록 소하천 전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후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추진토록 한다.
2. 하천의 복개 암거 등은 절대 금지하고 소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유기적으로 조화시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자연형 하천정비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3. 소하천 선형은 급격한 직강공사를 지양하고 자연 생태계의 유수방향이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획단면은 수해가 근원적으로 해소되도록 계획홍수량을 산정하여 충분한 하폭과 단 면이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5. 하천시설물은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꼭 필요한 시설물에 한하여 설치토록 한다.
6. 보, 도수로 등 기존 구조물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농로, 농수로 등도 함께 정비되도록 하여 복합효과를 달성하도록 한다.
7. 선형개량 등으로 생성된 용지는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등 다목적 이용공간으로 활용토록 한다.

6.7.2 주민의견 청취

1. 주민의견 청취대상
   1) 소하천 지정 및 폐지
   2) 소하천예정지 지정 및 변경

3)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4) 기타 소하천정비 및 보전상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7.3 공사시행

1. 철저한 공사감독 및 품질관리시험을 확인하여 부실시공를 방지토록 한다.
2. 조기 사업발주로 우기전에 완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3. 투자비가 지역에 환류되도록 자재 및 노동력을 가능하면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도록 한다.

6.7.4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1. 관리청 아닌자(비관리청)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소하천공사 완료시 비관리청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6.8 소하천대장

6.8.1 일반사항

1. 서론 : 소하천 대장 작성의 목적과 작성구역, 작성기간, 하천대장, 사후관리, 방침 대장의 보관부서 등을 기재한다.
2. 조사기재 요령 : 각 양식별로 각 란의 기재요령을 요약해서 기재한다.
3. 유역의 개황 : 유역의 특성과 수문특성, 임상 및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실히 기재한다.
4. 치수, 이수 및 환경관리사업의 연혁 :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을 주요 제방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개수계획에 대하여 충실히 기재한다.

6.8.2 소하천대장의 종류

1. 소하천 현황대장 : 소하천현황, 소하천 예정지 현황, 소하천 정비목표, 소하천 정비계획 등을 기록한 대장
2. 소하천 허가대장 : 소하천 구역내 피허가자, 위치, 기간, 허가목적 등을 기록한 대장

6.8.3 소하천 대장의 작성 · 관리

1. 소하천 현황대장 : 소하천별로 작성, 연 1회 이상 정리
2. 소하천 허가대장 : 시 · 군 · 구별로 작성, 월 1회 이상 정리

6.9 사업지도 감독 및 평가

6.9.1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다음해 소하천정비 사업비 배정시에 이를 반영토록 한다.

6.9.2 지도감독

1. 수계별 자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기간내에 완공토록 추진한다.
2. 철저한 공정관리와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1) 무단하도급, 형식적인 감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관 업무지침에 따라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한다.
   2) 관내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 부실공사 방지 등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3. 시·도에서는 기관장 책임하에 소하천정비 추진상황을 연2회(5,11월)이상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조치토록 한다.
4. 필요시 당해 시·군·구에 지시하고, 그 결과를 내무부에 추진상황보고시 보고토록 한다.
   1) 사업지구선정의 적정성
   2) 예산확보 상황
   3) 공종별 공사추진상황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내용 이행상황, 시공과정, 사업 대상지구 임의변경 시행 등)
   4) 사진촬영 및 기록 보존
   5) 공사시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신공법 및 환경기능도입, 다목적정비상황, 지시사항이행 등

6.9.3 사업평가

1. 내무부, 시·도 합동으로 당해연도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11~12월)하여 우수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한다.
2. 사업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을 실시한다.

6.10 공사감독시 확인 및 이행해야 할 사항

6.10.1 일반사항

1. 가설공사 시공
2.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
3. 공정계획 수립
4. 편입용지 및 지장물 재확인 조사
5. 보고사항 이행
6. 사진촬영 등 기록보존

6.10.2 기술 사항

1. 시공측량 실시
2. 각종 재료시험 및 시공관리 철저
3. 공사단계별 중요 공정은 사전 감독관 확인후 시행
4. 편입용지 및 지장물 재확인 조사
5. 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
   1) 토공　　2) 연약지반　　3) 토질시험　　4) 재료시험
   5) 호안공사 기초 깊이　　6) 배수관 이음부 접합시공 등

6.10.3 기타 사항

1. 불법 하도급 방지
2. 형식적인 감리·감독 배제
3. 철저한 공정관리 및 공기내 준공조치
4. 기 준공지구의 하자검사 실시 확인

6.11 유지관리

6.11.1 소하천 정비·점용상황 등을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사항을 강구한다.

1. 시·군·구 자체적으로 1회, 시·도, 시·군·구 합동으로 1회이상, 매년 정기적으로 전체 소하천에 대한 정비상황과 점용상황 등을 점검한다.
2. 재해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한다.
   1) 해빙기 및 우기전에 상습적인 피해발생지구 등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 검을 실시한다.
   2) 날로 심화되고 있는 소하천의 오염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정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법투기자 등 각종 오염유발자를 처벌토록 한다.

6.11.2 상시 점검·정비 체계 유지

1. '소하천 점검 순찰반'을 편성하여 수해 상습침수지역, 오물 등 오염물질 상습 투기지역의 상시 점검·정비에 대한 체계를 확립토록 한다.
2. 제방, 호안, 보, 수문 등 하천 부속시설물을 상시 점검·정비한다.

6.11.3 적정시기에 보수가 되도록 보수체계를 확립하여 주민불편 해소

1. 해빙기, 우기, 영농기 등 재해발생 우려와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기를 가급적 피해 보수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한다.
2. 풍수해 등으로 파손된 제방, 호안, 보, 수문 등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 및 항구대책을 수립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한다.